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2 선고 2020가단5760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6. 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20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46,619,6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6,619,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382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6. 11. 2. 위 법원으로부터 ‘소외 C는 원고에게 37,121,061원 및 그중 15,439,730원에 대하여 2016. 11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(이하 ‘이 사건 이행권고결정’이라고 한다)을 받았고, 2016. 11. 23. 그대로 확정되었다.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. 12. 14. 기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원리금은 46,619,650원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은 망 D의 소유였는데, 망 D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인 C, E, F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(상속지분은 피고 3/9, C, E, F 각 2/9이다), 2019. 7. 20. 위 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’이라고 한다)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8. 19.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. 1. 23.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2019. 9. 23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38,000,000원 상당이고, 소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이 7,610,000원, 소극재산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43,364,623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체결

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,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는바,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/9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소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(1)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바,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.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.

(2)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738,000,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00,000,000원을 공제하면 438,000,000원인바, 소외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/9 지분의 가액은 97,333,333원($=438,000,000\text{원} \times 2/9$, 원 미만 버림)이다.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C에 대한 채권액이 46,619,6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(3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의 상속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인 46,619,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종민

별 지 목 록

1 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164.553 m²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,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 32340.1 m²

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 32349 분의 100.266

- 이 상 -